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삭제〉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029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삭제	2
IV . 참고자료	7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7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삭제

개정안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인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 른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가 될 수 없다. <u>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5. (생 략) ⑤ ~ ⑨ (생 략)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 른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 사)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 관리사가 될 수 없다. <u>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 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1. 피성년후견인</u>

2. ~ 5. (생략) ③ ~ ⑦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에서 적용한다.
---------------------------------------	--

법 제21조¹⁾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과 상수도관망시설의

1)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²⁾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³⁾를 배치하여야 하고,

동법 제24조제4항⁴⁾ 및 제25조의2제2항⁵⁾에서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그런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로서의 업

-
- 2)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 3)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란 상수도관망 및 그 부속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함.
- 4)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법률 제1966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현재 1·2·3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1·2급으로 분류되어 있음. 각 급수에 맞는 응시자격은 참고자료 참조.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관련 지식 및 경력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라고 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업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특별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일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인격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결격사유는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되는 사유로서, 결국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두는 경우에는 입법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당 결격사유의 취지와 대상 자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정부에서는 결격사유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정비)을 위해 유사 사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률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⁷⁾임.

다만, 개정안 부칙 제1조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

7) 22대 국회에 미성년자 결격사유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1997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2113호) 등이 제출되었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4년 8월 27일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성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의 적용시점을 자격 취득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하는 내용)을 원안의결하였음.

성년자를 삭제하는 개정규정을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소급하여 규정⁸⁾하고 있는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양성교육 과정이 2024년 하반기(10월 이후)로 계획되어 있고,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가 없는 점(참고자료2) 등을 고려할 때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부칙안 제1조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

8)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수도법 개정 이전 1·2·3급의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수도법」 개정(2023년 8월 16일 개정)에 따라 2024년 8월 17일 이후(2026년 8월 17일 이후 양성과정만 운영)에는 3급 자격시험과 양성과정(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무교육을 통해 법률안 개정 이전에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하여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 취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임.

※ 참고자료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 수도법 시행령 [별표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요건

등 급	응 시 자 격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 수도법 시행령 [별표3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

등급	자격요건
1.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 리사 1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수도관망 시설운영관 리사 2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학과를 졸업(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수도시설의 설치·유지·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참고자료2. 연령대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취득현황

구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¹⁾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²⁾		
	연령대	인원수(명)	비율	연령대	인원수(명)	비율
급수	총계	3,822		총계	3,806	
1급	합계	444	100.00%	합계	2,236	100.00%
	10대	-	-	10대	-	-
	20대	31	3.92%	20대	117	2.43%
	30대	179	33.92%	30대	428	13.34%
	40대	187	47.25%	40대	690	28.68%
	50대	46	14.53%	50대	679	35.27%
	60대	1	0.38%	60대	302	18.83%
	70대	-	-	70대	20	1.45%
2급	합계	864	100.00%	합계	1,570	100.00%
	10대	-	-	10대	-	-
	20대	155	10.91%	20대	105	3.07%
	30대	363	38.33%	30대	274	12.03%
	40대	288	40.55%	40대	424	24.82%
	50대	58	10.21%	50대	507	37.10%
	60대	-	-	60대	251	22.04%
	70대	-	-	70대	9	0.92%
3급	합계	2,514	100.00%	합계	-	-
	10대 ³⁾	2	0.02%	10대	-	-
	20대	454	10.65%	20대	-	-
	30대	893	31.43%	30대	-	-
	40대	903	42.38%	40대	-	-
	50대	251	14.72%	50대	-	-
	60대	10	0.70%	60대	-	-
	70대	1	0.08%	70대	-	-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회~35회 기준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차~47차 발급분 3,806명(건) 기준

3) 만 19세 이상의 사람임

* 현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3급은 모두 시험검정형으로 운영 중이며, 과정이수형은 「수도법」 개정('23.8)에 따라 '24.8월 이후 시행되어 실제 '24년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

** 양성과정을 이수했으나 아직 자격신청을 하지 않은 인원은 1급 29명, 2급 22명임